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김동아·주철현·김문수

김우영 • 윤종군 • 임오경

이광희 • 양문석 • 민형배

안태준 · 송재봉 · 이건태

김현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 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 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 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 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 선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

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0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 하고,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자가 불가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수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범위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0조의2(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발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불가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에 굴적야도록 하여 조사일 구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사 기관이 수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 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장 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하 여야 하며, 조사범위는 출석요
	구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③ 수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생 략)

第200條의3(緊急逮捕)(생 략)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 期間) (생략)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 제200조의6(체포와 피의사실 등 의 고지) (생략)

第200條의6(準用規定)(생략)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 야 한다.

第200條의3(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 제200조의2와 같음)

第200條의4(緊急逮捕) (현행 제20 0조의3과 같음)

第200條의5(緊急逮捕와 令狀請求 期間) (현행 제200조의4와 같 음)

의 고지) (현행 제200조의5와 같음)

第200條의7(準用規定) (현행 제20 0조의6과 같음)